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회규정

제 정 : 1992. 7. 7.
제1차개정 : 1999. 4. 2.
제2차개정 : 2003. 8. 5.
제3차개정 : 2004. 4. 2.
제4차개정 : 2004.12. 9.
제5차개정 : 2007.10.10.
제6차개정 : 2009. 3.25.
제7차개정 : 2010. 7.21.
제8차개정 : 2020. 3.13.
제9차개정 : 2022. 8.26.
제10차개정 : 2022.11.29.
제11차개정 : 2023. 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가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사장이 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의 2(1급 본부장의 출석) 1급 본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한 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사회 소집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다음 각 호의 기일 전에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반 사항 : 이사회 개최일 7일전
2. 차년도 예산안 : 이사회 개최일 15일전

제5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운영계획의 편성(수립), 변경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결산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및 채권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8. 무역보험의 종류 및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다만, 무역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1.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에 관한 사항
13.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14.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법, 시행령의 개정 및 정관의 변경 외의 사유에 한한다)
15. 사장과 체결할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대한 계약안 작성에 관한 사항
1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7. 다음 각목의 내규의 제정과 폐기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규정
 - 나. 경영위원회규정
 - 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라. 취업규칙
 - 마. 직제규정
 - 바.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 사. 보수규정
 - 아. 퇴직금규정

자. 회계규정

차. 감사규정

카.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18. 5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법령, 기타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

20.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 그 일부를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임원 또는 관계직원에게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사항)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과 개폐 사항
4. 법, 시행령의 개정 및 정관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폐 사항
5.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정부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부결된 사항
6. 법령 기타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이사회 개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제척과 회피)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이사 또는 이사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이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회피한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8조의 의결을 위한 재적이사 수 및 제4조 제1항의 이사회 소집요구를 위한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의사담당부서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은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비치용으로 보관하고 부본은 의장이 따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

③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최 및 폐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또는 결석한 임원의 성명
3. 회의 사항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출석인원과 의사담당부서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의사록은 차회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한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1992. 7. 7부터 시행한다.

부칙(1)

이 규정은 1999. 4. 2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내규규정」 제2조 제3항 중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로 개정된 것으로 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